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따라 브룩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 또는 투자조사 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에게 부과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투자자문수수료 :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수수료는 시장가격에 따라 객관성을 두고 공정하게 부과한다.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수수료 종류)

회사의 수수료는 고객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또는 달리 특정 고객과 논의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 또는 조사 업무를 제공하고 다음을 기초로 하여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 (i) 제공한 업무의 가치에 기초하여 합의된 확정 수수료로 회사 (보수 비용 및 간접비 배분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에 투자자와 합의된 추가적인 비용을 더한 직접비용을 뜻한다.
- (ii) 일정한 경우 성과보수, 단 성과보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및
- (iii) 각 계정 거래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거래 건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 6 조 (청구 회수/청구방법)

수수료의 지급은 각 투자자와 논의하여 합의한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현재시거나 분기별 평균 시가로 분기별로 후급하여 청구된다. 회사의 업무는 어느 당사자 일방에 의해 관련 계약상의 통지조항에 따른 서면통지시에 해지된다. 해지 시, 기재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안분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설명 의무)

회사는 법 제 4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본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 58 조제 3 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준의 제정 및 개정)

회사 경영진은 이 기준 기재 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